

제 896 호
1982. 3.12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박영수
편집 : 공보관리홍우
전화 :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통합인쇄소
전화 : 725-6090

시 보

차 례

◎ 예 규		
제 417 호 :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	3
◎ 고 시		
제 105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8
제 106 호 :	서울역~서대문제1구역제1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9
제 107 호 :	도시계획용도지역맞시설 (도로, 광장, 철도) 실효	9
제 108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1
제 10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취소	11
◎ 공 고		
제 110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2
제 11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계획공람공고	12
제 116 호 :	도시계획시설 (목동중학교진입로포장공사) 실시계획 공람공고	13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93 서울특별시

제 120 호 :	도로무단점용부당이특금현장고시제실시지역및징수 요액공고	14
제 121 호 :	도로공사계획공고	17
제 122 호 :	환지처분을위한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8
제 123 호 :	환지계획변경공람공고	19
제 124 호 :	도시계획사업(녹지사업)실시계획에따른공람공고	19

© 사 령

예 규

○서울특별시예규제 417호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
건물단속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발생무허가건물의 예방단속 및 근절을 위한 제반단속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발생 무허가건물(이하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70.6.20이후 적법한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2. "건물"이라 함은 보지에 정착한 건축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가설물"이라 함은 천막, 함판, 우막, 비닐 등 비내구재만을 사용 구조함으로써 용이하게 건축 또는 철거할 수 있는 단층형태로서 사외통법상 건물이라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4. 미진행사항이란 기초공사, 적치물, 출입문 등 조장 유지지역내

비닐하우스 기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부수시설"이라 함은 건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폭1m이하의 이웃에 피해를 초래하는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경)대문과 가정용물탱크, 장독대(높이 2.1m미만 다용도사용불가), 연탄광(기존 9명미만 주택에 3명미만)굴뚝(가정용), 옥탑(옥상출입구차면용) 경비용 방루, 우물덮개등 이와 유사한 동작물을 말한다.
6. "행정조치건물"이라 함은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임시대책의 일환으로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에 따라 취하여진 초가서붕계람 미화단장, 건물의 이동정리, 가수용 및 기타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받은 건물을 말한다.
7. "예방단속"이라 함은 무허가건물을 축조시 지붕이 시공되기 이전에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단속의 대상) 건축법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승인 및 협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이전)대수선 주요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물은 모두 단속의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무허가 건물의 대수선, 주요변경 및 용도변경도 또한 같다.

다만 비건물과 부수시설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단속의 책임소관부서) ①임야 (그린벨트포함) 공원, 녹지, 도로 하천구거부지등 공공용지역에서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예방단속과 적발 및 철거책임소관부서는 각 공공용지의 관리부서에서 관장한다. 다만, 철거작업에 대하여는 구주택과에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제 1항의외 지역에서의 무허가건물의 예방단속과 적발책임은 동장파출소장이 지고 철거책임은 구청장이 진다.

③적법건물의 대수선 주요변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단속 및 시정책임은 건축허가부서에서 주관하되 단속업무 종사직원이 적발시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조치위반 건물에 대한 단속과 시정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

⑤구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기관리사업소등에 장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장비지원을 요청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비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5 조 (단속체제의 확립) 신발생무

허가건물의 예방단속적납 및 철거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 및 동파출소에 다음과 같은 단속체제를 확립 운영한다.

1. 구에는 기동순찰반과 철거반을 둔다.
2. 동파출소에는 지역담당순찰제와 통·반장 및 주민신고제를 활용 운영한다.

제 6 조 (단속체제 운영방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체제의 운영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순찰반 운영

구의 기동순찰반은 정규직원을 반장으로 한 감시원으로 구성하고 주 3회이상 담당구역을 순시하고 그 결과를 일지 (별표 1) 에 기록한다.

2. 철거반 운영

구의 철거반은 정규직원을 반장으로 한 철거원으로 구성하고 시장, 구청장의 처리지시사항과 동적발보고분에 대한 철거업무불전담집행하고 그 결과를 사진첨부 (3명이상) 철거일시 (별표 2) 에 기록한다.

3. 지역담당순찰제 실시

동장 및 파출소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지역을 주 3회이상 (단, 동장은 2회) 순찰케 하고

그 결과를 순찰일지(별표3)에 (개인별비치) 기록하며 적발사항은 구청장에게 확보한다.

4. 주민신고제 실시

시·구·동의 민원신고 접수제도를 활용, 신고사항을 대장에 등재하여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신고시민에게는 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항공촬영업무처리) ①시장은 항공촬영을 년 2 회 실시하여 지상 건물의 변동상황을 관측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함축판독 및 처리조서에 악식현황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처리지시한다.

②구청장은 전항의 지시된 사항을 동장에게 시달 현지조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 제 2 항의 조사결과를 구청장은 허가건물에 대하여는 필히 허가대장의 조회등으로 재확인할 것이며 기타사항은 함축판독 및 처리조서에 의거 엄격히 구분 기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④구청장은 조사결과 적출된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즉시 철거조치하

여야 하며 발생상황을 분석하여 적출·철거 등 단속책임 관서공무원을 문책하여야 한다.

제 8 조 (지상촬영감시)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약지구를 선정하여 지상촬영감시할 수 있다.

②지상촬영 관측결과 적출된 건물에 대하여는 함축결과처리의 절차를 준용하여 조치한다.

제 9 조 (철거업무처리) ①신발생 무허가건물은 무대체 무제고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철거의 경우에도 1차 자진철거를 권유한 후 철거한다.

②도시계획상 저촉되지 않고 사실상 완공된 건물은 제고후 철거한다. 다만, 가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 ①, 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제고하거나 제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철거는 건물의 기초부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동장 및 과출소장은 철거후 사후관리를 철거하여야 한다.

⑤철거원은 철거업무안 전담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업무를 명할 수 있다.

①공공, 공용 및 공익건물은 철거에서 제외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 10 조 (단속업무관계공무원의 신상필벌) ①신발생 무허가건물단속 업무처리관계를 매년 구청별로 평가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특진 및 표창하고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단속업무종사공무원의 처리기준은 별표 4에 의한 문책기준표에 의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자체문책기준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위법건축주처벌) ①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 8 장 (벌칙편) 을 적용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업무의 세부처리방법은 따로 정하는 건축자 룹보 및 고발요령에 의한다.

제 12 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①제 9 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철거물 대집행할 경우 그 비용을 건축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주가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대집행비용의 징수방법과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단속업무확인) 구청장은 매분기별로 소속동사무소의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업무수행 상황을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 14 조 (보고) 구청장은 다음사항을 월보로 시장에게 보고한다.

1. 신발생 무허가건물 처리상황 보고 (별지 2호서식)
- 부표 1) 단속수단별 현황
- 2) 토지소유별 현황
- 3) 발생지역별 현황
- 4) 구조별 현황
- 5) 규모별 현황
- 6) 단속관계공무원 문책현황
- 7) 무허가건축주 조치현황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2.3.5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발생되어 처리종이치 않은 처할 사항을 종전규정에 의한다.

문 제 기 준 표

직 무	량 정		견 책	감 봉	정 직	혜 임	과 면	
	직 책							
순찰 불이행 (월간, 회수)	동담당		3	4	6	8	10	
	사무장		6	10	15	18	20	
	동 장		10	15	20	25	30	
	구담당		3	4	6	8	10	
	계 장		6	10	15	18	20	
처 리 지 연 통보 } 계고 } 건당, 일수 철거 } 단, 가건물은 고발 } 2배수	동담당		3	5	7	9	11	
	사무장		10	15	20	25	30	
	동 장		15	20	25	30	35	
	구담당		5	10	15	20	25	
	계 장		10	20	30	40	50	
함축결과신발생 적출 · 관호내는 특 수전물 · 가건물은 3배수 · 전수, 평수 각각 적용 · 전수기준 3평이상	건 수	동담당	3	4	6	8	10	
		사무장	직원 2명 이상					
		동 장	10	13	15	17	21	
		구담당	3	4	6	8	10	
	평 수	계 장	10	13	16	19	21	
		동담당	10(5)	15(10)	25(20)	35(25)	40(30)	
		사무장	직원 2명 이상					
		동 장	30(10)	40(20)	40(30)	80(50)	130(50)	
수	구담당	10(5)	15(10)	25(20)	35(25)	40(30)		
	계 장	20(10)	40(20)	60(30)	80(40)	100(50)		
비 고		1. 관리직은 소속직원의 연계수 적용 2. 과장급이상은 연대책임제 적용						

고 시

다 음

◎ 서울특별시고시제 10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3.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2. 사업주체의 성명 : 주식회사상업은행
대표이사 : 공 덕 중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길동 53 번지의 4 필지
4. 토지면적 및 규모
토지 : 12,087.15㎡
규모 : 아파트 12 층 2 동 312 세대
5. 사업시행기간
1982. 3. - 1982. 12. 15
6.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 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3 류	6 m	160 m	강동구길동 54-2	강동구길동 산 3	
배지	"	"	"	100 m	강동구길동 1-1	강동구명일동 산 69-2	
"	"	"	"	90 m	강동구길동 산 3	강동구길동 산 3	
기정	"	"	"	250 m	강동구명일동 산 69-2	강동구길동 산 3	
변경	"	"	"	200 m	강동구명일동 산 1-1	강동구길동 산 3	노선축소및 위치변경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6 호

서울역-서대문제1구역제1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 1. 건설부고시 제 368 호 (73.9.6)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76 호 (77.4.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380 호 (81.10.21) 로 사업계획결정 및 변경결정된 서울역-서대문제1구역제1지구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12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제 16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다.

1982. 3. 10.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의 명칭

서울역-서대문제1구역제1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위치 : 중구순화동 7-2 외
160 필지

다. 시행면적 : 22,059.2 m²

- 대지면적 : 16,685.8 m²
- 공공용지면적 : 5,373.4 m²

라. 건축계획 (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

- 건축면적 : 약 5,200 m²
(건적율 약 31%)
- 연면적 : 약 59,500 m²
(용적율 약 270%)

○ 주용도 : 업무시설

○ 층 수 : 지상 18층, 지하 3층

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중구서소문동 58-9

바. 시행기간 : 1982.3.10-1985.3.31

사. 시행자의 주소, 성명

중구서소문동 58-9

주식회사 중앙일보 대표이사 이종기)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 별첨 (성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7 호

도시계획용도지역및시설

(도로, 광장, 철도) 실효

- 1. 건설부고시 제 393 호 (78.12.7)로 결정고시된 당시관내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도로, 광장, 철도)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4 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효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3. 11

서울특별시 장

가. 용도지역실효조사								
구분	위치			면적 (㎡)		비고		
준주거지역	구로구신도림동일대			188,000				
상업지역	구로구구도동일대			276,190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나. 도로실효조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실효	광로		45	40-80	7,550	구로동	봉천동 (광 19)	미확정구간 실효
"	대로	2	54	30	4,650	신길동대 3-28	구로동대 1-50	"
"	"	1	51	35	1,950	구로동대 1-45	구로동대 3-18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다. 광장실효조사								
구분	번호	광장명		위치		면적 (㎡)	비고	
실효	74	북신도림광장		구로구신도림동 360 일대		49,200		
"	75	남신도림광장		" " 4 일대		53,000		
"	112	서구로광장		" 구로동 552 일대		16,000		
"	113	동구로광장		" " 8 일대		48,000		
"	115	가리봉광장		" 가리봉동 516 일대		50,000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라. 철도실효조사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실효	철도	구로역및영등포역과구로동 685 일대			1,101,000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0 호 (82.1.23) 로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된 성동구 관내 자양동 696-1 호 - 697-9 호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2.12.31) 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3.11.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폐지	소로	3	6	㎡	115	㎡	자양동 696-1	자양동 697-9				

나. 결정도면별첨 (생략) 끝.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취소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7 호 (77.7.29)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도시계획사업 (학교)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78 조에 의거 시행허가 취소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3.15.

서울특별시 장

○ 취소내용

가. 사업시행지 : 서대문구 홍은동 산 26-126 외 1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명지중고교 체육장부지조성

다. 사업면적 : 6,301 평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동년월일 : 1977. 8. 6.

준공예정일 : 1981. 3. 31.

마.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권리명세

별첨 (생략)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 총 16,988 ㎡ 중
3,865.90 ㎡

나. 사업시행규모 : 공작날설치후 운
동장조성

4. 사업의 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시
성북구 정능동 산 16-1

학교법인 성한학원 이사장 문상득

5.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일 : 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나.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년

6. 사용할 토지 : 별첨토지조서(생략)

3.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3. 12.

서울특별시장

- 공 랑 계 요 -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목동 405의
174 목동 88의 1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 목동중학교
진입로 포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포장 폭 10미터
연장 420미터

4.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5. 사업기간 : 인가일 - 92.10.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7.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 : 별첨토지조서내역

나. 보상시기 : 1982. -1982

다. 보상절차

○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체결요
구일로부터 2월이내 협의
취득

○ 협의불응시 토지수용법 제 25
조 2항 및 동법 27조에 의거
강제수용

라. 보상지급방법 : 계약과 동시 보
상금전액지급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116 호

도시계획시설(목동중학교진입로포장공사)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 호 (72.1.

7)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10미터 계획도로인 목동중학교진입

로 포장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수립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일반인 공람에 공하

고자 이에 공고함.

2.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것이
나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
음함.

<p>○ 서울특별시 공고제 120 호</p> <p>도로 무단점용부당이득금현장고지제 실시지역 및 징수요액 공고</p> <p>1. 도로법 제 80 조의 2 에 의거 도로 무단점용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현장고지제 실시지역 및 징수요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p> <p>2. 다만 현장고지제 실시지역 및 적용대상이외의 부당이득금징수방법</p>	<p>동은 종전과 같다.</p> <p>1982. 3. 서울특별시</p> <p>가. 적용대상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다음해당사항 ○ 도로상 점포앞 상품적치행위 ○ 도로상에서 기계의 수리, 공작물의 조립행위 ○ 폐기물등을 도로상에 내놓는 행위</p> <p>나. 시행일 : 82. 3.15</p>
--	--

다. 실시지역 및 지역별 징수요액

연번	노선별	대상지역 (구간)	1㎡당징수요액	비고
----	-----	-----------	---------	----

지역별 부당이득점용료내용
(1㎡당징수요액)

연번	노선명	구간	1㎡당 징수요액(원)	비고
1	세종로	중앙청 ~ 동아일보	2,000	종로
2	신분로	M B C ~ 광화문	2,000	"
3	종로	(종로1가) 광화문 ~ 신신백화점	5,000	"
4	"	(종로2가) 화신 ~ 경영빌딩	6,000	"
5	"	(종로3가) 파고다 ~ 피카디리	5,000	"
6	"	(종로4가) 단성사 ~ 서울전매청	4,000	"
7	"	(종로5가) 전매청 ~ 종로5가R	1,000	"
8	"	(종로6가) 종로5가R ~ 동대문	1,000	"

연번	노 선 명	구 간	1 ㎞ 당 정수로액(원)	비 고
9	청계로 (중로측)	동아일보~광교	5,000	총 로
10		광교~삼일빌딩	2,000	"
11	"	삼일빌딩~한전변전소	1,000	"
12	"	셀슈빌호텔~청계 4가 R	1,000	"
13	"	청계 4가 R~청계 5가 R	1,000	"
14	"	청계 5가 R~청계 8가 R	1,000	"
15	사 적 로	독립문~충양청	1,000	"
16	울 곡 로	충양청~이화동 R	1,000	"
17	해 평 로	감리회관~서소문입구	3,000	중 구
18	"	구중부소방서~시청	4,000	"
19	"	구대한일보~남대문	4,000	"
20	"	그랜드호텔~북창동입구	5,000	"
21	"	북창동입구~프라사호텔	6,000	"
22	남 대 문 로	경방코너~울지로입구	3,000	"
23	"	조흥은행~울지로입구	5,000	"
24	"	산업은행~상은본점	9,000	"
25	"	한전~충양우체국	5,000	"
26	"	한국은행~그랜드호텔	5,000	"
27	"	신세계~남대문시장입구	3,000	"
28	"	우남빌딩~한진고속앞	2,000	"
29	"	남문다당~세브란스빌딩	2,000	"
30	청계로 (중구측)	강원은행~청계 1가 R	3,000	"
31	"	조흥은행~ " 2가 R	2,000	"
32	"	청계 2가 R~ " 3가 R	2,000	"
33	"	" 3가 R~ " 4가 R	2,000	"
34	"	" 4가 R~ " 5가 R	2,000	"
35	"	" 5가 R~ " 6가 R	2,000	"
36	"	" 6가 R~ " 7가 R	1,000	"

연번	노 선 명	구 간	1 교 당 정수로액(원)	비 고
37	청계로(중구측)	청계 7 가 R ~ 청계 8 가 R	1,000	총 구
38	장 충 로	청계 6 가 R ~ 계림극장	"	"
39	"	신평화상가 ~ 서울운동장	"	"
40	"	율지 6 가 ~ 광희고가	"	"
41	"	" ~ 새평의원	"	"
42	"	광희고가 ~ 태극당	"	"
43	"	" ~ 장충체육관	"	"
44	퇴 계 로	서산부인파 ~ 광희고가	"	"
45	"	광희문 ~ "	"	"
46	"	퇴계 6 가 R ~ 퇴계 5 가 R	"	"
47	"	(삼성전자) ~ 경남카바	"	"
48	"	퇴계 5 가 R ~ 퇴계 4 가 R (충무 5 가 주유소)	"	"
49	"	" ~ 퇴계 4 가 R (동대입구)	"	"
50	"	퇴계 4 가 R ~ 퇴계 3 가 R	2,000	"
51	"	퇴계로 4 가 R ~ 성심병원	1,000	"
52	"	" 3 가 R ~ 삼일로	2,000	"
53	"	수경사입구 ~ 남산로입구	1,000	"
54	"	퇴계 2 가 성창빌딩 ~ 대연차	4,000	"
55	"	한전중부지점 ~ 무역회관	4,000	"
56	"	신세계주차장 ~ 남산육교	2,000	"
57	"	서울식품 ~ 아리랑호텔	1,000	"
58	"	남산육교 ~ 동양고속	1,000	"
59	율 지 로	시청 ~ 율지로 1 가 R	6,000	"
60	"	백남빌딩 ~ 산업은행	8,000	"
61	"	한양투자 ~ 율지입구	4,000	"
62	"	대일한의원 ~ 주택은행	4,000	"
63	"	율지 2 가 ~ 율지 3 가 (한일은행)	3,000	"
64	"	율지 2 가 ~ 모니크양화	3,000	"

제 896 호

시

보

1982.3.12

20-1

연번	노선명	구간	1㎡당 정수료액(원)	비고
65	울지로	울지 3가~울지 4기	3,000	충구
66	"	" 3가PB~대성인테리	1,000	"
67	"	" 4가R~울지 5가조풍은행	"	"
68	"	" 4가R~ " 주유소	"	"
69	"	" 5가~계림극장	"	"
70	"	" 5가~울지 6가R	"	"
71	"	" 6가~서산부인파	"	"
72	창경로	퇴계 4가R~울지 4가R	"	"
73	"	" ~구시사통신사	"	"
74	"	울지 4가~퇴계 4가R	2,000	"
75	"	" 4가R~창제 4가R	2,000	"

◎서울특별시공고제 121 호

도로공사계획공고

1. 도로법 시행령 제 24 조 3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 17 조 2 에 의거 도로공

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목과에 비치
하여 열람하게 함.

1982. 3. 12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공사계획 내역

노선명	공사명	공사시행구간	시행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망원동 57 주변 하수도 및 도로정비공사	망원동 57 일대	마포구청	3.15- 5.18
"	성산동 572-296 주변 "	망원동 572-155 572- 480	"	3.15- 5.20
"	용강동 494 주변 "	용강동 494 일대	"	3.15- 5. 3

노선명	공사명	공사시행구간	시행자	시행기간
서울특별시도	아현동 346-329 하수도 개량공사	아현동 346-33 329-12	마포구청	3.15- 5.25
"	성산동 572-390 주변 "	성산동 572-45 572-514	"	3.15- 4.12
"	망원동 410-415 주변 "	망원동 410-1 415-34	"	3.15- 4.5
"	연남동 370-15 370-21 하수도 개량공사	연남동 370-15 370-21	"	3.15- 4.15

* 도면생략
위와 같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니 본 구간내 지하매설물(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기타) 등 유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기간중에 시행하도록 하기 바람.

◎ 서울특별시 공고제 122 호

환지처분율위반환지계획변경공란공고

1. 당시에 시행한 경인 및 김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환지처분을 위하여 환지확정 측량 및 처분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확정면적이 예정지면적과 다소 증감이 있어 환지 확정 조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이월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이고 또한 별도 개별 통지 하겠으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한다.

1982. 3. 1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경인, 김포토지구획정리사업

나. 위치 : 강서구 화곡, 신월, 신정, 등촌, 염창, 내반산 목동일대

다. 면적 : 2,600,000 평

(경인 1,648,000 평,

김포 1,012,000 평)

○ 서울특별시공고제 123 호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

- 1. 장안평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에 정지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기 환지계획을 변경코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킨다.
- 2. 환지계획 변경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3. 본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송달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2. 3. 15.

서울특별시장

환지계획 변경내역

- 가. 사업명 : 장안평 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변경면적 : 6,979.8 평
- 다. 위치 : 동대문구 장안동 26-10 외 37 필지
(변경도서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124 호

도시계획사업 (녹지사업) 실시 계획에 따른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74호(79.11.17)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결정 고시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422번지에 대하여 도로 개설 및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 2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보인다.
- 3. 본 공사에 대하여 별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나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본 공고로 가름한다.

1982. 3.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422번지
-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종류 : 녹지조성
명칭 : 개 3 한강교 북측 녹지조성사업

- 3. 사업의 규모 : 총 1,460 중 165
- 4. 사업시행자 : 용산구청장
- 5. 사용토는수용할 토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422번지
- 6. 공람공고기간 1982.3-1982.3
- 7. 착공 및 준공예정일 : 1982.3 -
1982.11.30
- 8.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서울특
별시 용산구 한남동 422번지
김 광 수
- 9.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 10. 공사계약 설계서 :

사 령

◎ 1982년 3월 11일자 명제 93호

시 민 과 훈 증 기
지 방 전 기 기 사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 1982년 3월 15일자 명제 94호

이 정 덕

남부수도관리사업소
7호봉
지방토목기사보시보

명제 95호

조 병 현

성북구
1호봉
지방미적기원사보

◎ 1982년 3월 11일자 명제 96호

동작구보건소장 김 제 권
지 방 의 무 기 정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명제 97호

재 정 기 획 과 임 주 창
서 기 관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제 1항 제 2호
의 규정에 의거 견책에 처함.

◎ 1982년 3월 12일자 명제 99호

관 악 구 최 일 영
지 방 전 속 기 원 보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종로구 근무를 명함.